

제 1505 호
1990. 7.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유 천 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제2347호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검사시행규칙증개정규칙 3

◎ 예 규
제527호 서울특별시제비지관리및처분규정증개정규정 3

◎ 고 시
제249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개정고시 4
제251호 돼지고기연동가죽변경고시 4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94

● 공 고	
제34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4
● 구 고 시	
제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동대문)	5
제3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은평)	5
제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구로)	6
제56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구로)	6
● 사업소고시	
제20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8
● 시교위고시	
제27호 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결정상황고시	8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검사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7. 28

서울특별시시장고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47호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검사
시험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검사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부함으로서”를 “불임으로써”로 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품목제조허가조건) 다음 식품의 품목제조허가를 할 때에는 최초생산품에 대하여 안전포장된(시판품) 견체로서 확인 시험을 받아 시판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아이스크림류
2. 유가공품
3. 식육제품 및 식육가공품 (단순절단된 것을 제외한다)
4. 어육연제품
5. 인스탄트제품
6. 조미식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확인시험 의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최초 생산품에 대한 확인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식품의 적량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중 “서울특별시시장 또는”을 삭제하고 “허가한 식품” 다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7. 28

서울특별시시장고건 ㉔

◎서울특별시예규제527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서울특별시”를 “자치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떡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자는 계약체결전에 관한 구청장의 떡저취득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제7호 서식중 계약체결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떡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자는 계약 체결전에 관한 구청장의 떡저취득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49호

서울특별시식품집객업소영업시간제한
개 정 고 시

심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건
전사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식품위생법 제30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집객업소(관광호텔
내와 역사내 유흥집객업소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0. 7.

서울특별시장

- 1. 식품집객업소(관광호텔내와 역사내 유흥
집객업소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소)영업시
간 제한 내역

업종	영업시간 제한		비고
	종전	개정	
관광 호텔내 - 무도유흥집객업 - 일반유흥집객업	02:00 17:00	24:00 17:00	2시간 단축
관광 음식점업 - 무도유흥집객업 (관광극장식당업) - 일반유흥집객업 (한국음식점)	02:00 17:00	24:00 17:00	2시간 단축
역사(廟舍)내 업소 - 무도유흥집객업 - 일반유흥집객업	02:00 17:00	24:00 17:00	2시간 단축

*단, 국제행사, 국가주요행사, 축제기간
등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업종과 구
역, 기간을 정하여 별도 영업시간을 조정
시행함

- 2. 시행일자: 이 고시는 1990년 9월 1일부
터 시행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51호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최고기 및 돼지고기 소리와 가격제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88-24호 88.
9. 14)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7. 30

서울특별시장

- 1. 돼지고기 연동 고시가격
: 정육 100g 당 390원
500g 당 1,950원
- 2. 시행일: 1990. 8. 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43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공고합니다.

1990. 7. 25

서울특별시장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내역							
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인 가 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철 물 공 사 업 82-11-67	황보공사	박남희	서울 중구 남산동2가 49-16	(주) 원 성	이평윤	경북 영인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388-5	'90 7. 25
도 장 공 사 업 82-05-64							
목 공 사 업 82-01-16							

구 고 시	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7. 동 대 문 구 청 장
◎동대문고시제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504호('89. 11.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동대문구 청량리 57-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	

아 래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연장(㎞)	규모(㎡)	비 고
신 설	소 로	1		10	80	800	신 설

나. 고시도면 : 별첨(생략) ◎은평구고시제34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은평구고시 제90-3호('90. 1. 9)로 고시	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7. 은 평 구 청 장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	과 동
2. 사업주체	서울시경 특경대 조합외 3개 조합	과 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은평구 갈현동 267-1의 1번지	과 동
나. 대지면적	5,085.30㎡	과 동
다. 건축연면적	13,098.178㎡	13,511.07㎡
라. 규 모	아파트 14층 1동 119세대	아파트 15층 1동 123세대
4. 사업시행기간	'90. 1 - '91. 6	과 동

●구로구고시제55호

도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231호('90. 7. 13)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7.

구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로	3	6	100	은수동 53-2	은수동 45-31	
기 경	소로	3	6	70	은수동 22-5	은수동 22-4	
변 경	소로	3	6	75	은수동 23-7	은수동 20-4	위치변경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구로구고시제5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60호('90. 7. 9)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

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관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7.

구로구청장

<p>“공사개요”</p> <p>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번지의 1개소.</p> <p>나. 사업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오류동 3번지의 1개소 도로 개설 공사</p> <p>다. 사업규모: 도로포장 B=11m, L=76m 하수도(D=450%), L=76m</p>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90. 12. 31</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p>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p>
---	---

○ 토 지 조 서

번호	소재지번	지류	시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오류동 3-82	대	2	오류동 3-75	강해룡		
2	" 3-83	"	5	" 3-76	유장준		
3	" 3-84	"	3	" 3-9	임낙연		
4	오류동산5-57	임	746	마포구 창전동 402-18	박능진		
5	" 81-193	전	110	서초구 서초동 산9-19성A12동 905호	박영제		
6	" 61-230	대	240	종로구 청운동 217번지	박영자		

○ 물 건 조 서

연번	동 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오류동	3-9	주택	백회브리조 와즙	26	임 낙 연	오류동 3-9
2	"	3-75	"	연와조 세멘와즙	22	강 해 룡	" 3-75
			화장실	세멘브릭 스투트	2		
			창 고		3		
			담 장		13㎡		
3	"	3-76	주 택	세멘벽돌 세멘와즙	28	유 장 준	"3-76
			화장실	세멘브릭 스투트	2		
			담 장	브 릿	10㎡		
			장 미		1주		
			사철나무		1주		

사 령			
◎1990년 7월 26일자 4급공무원 교육파견 해제 및 진보 령 제30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임 체 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근무를 해제함 서초구 도시경비국장에 보함	내 무 국	지방서기관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변경 령 제30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성 수 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소청 90-64, '90. 7. 14)에 따라 '90. 5. 14 감봉 3월 처분을 동일자 전책 으로 처분 변경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지방수도토목기원
박 정 윤	"	"	"
◎1990년 7월 30일자 기술, 기능직 공무원 징계처분 령 제30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차 영 태	지방상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건책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운전원 (기능10등급)
이 상 철	위 와 같 음	"	"
정 환 익	위 와 같 음	"	지방사무보조원 (기능10등급)
손 창 섭	불문경고(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 방 수 도 토 목 기 사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10등급) 령 제30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연 숙	지방사무보조원 시보(조무)를 임함 4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최 강 현	지방방호원 시보(경비)를 임함 5호봉을 급함 관재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7월 25일자

8급 기술직 공무원 신규 임용

령 제88호

연번	성명	임용직급	임용호봉	임용부서
1	권성훈	지방수도토목기원보시보	3	은평수도사업소
2	한희선	지방수도토목기원보	5	강동수도사업소
3	이일재	"	5	강서수도사업소
4	김영주	"	3	동부수도사업소
5	박동봉	"	4	중부수도사업소
6	김정준	"	5	서부수도사업소
7	김재용	지방수도토목기원보시보	3	중부수도사업소
8	윤창섭	"	1	은평수도사업소
9	오재영	지방수도토목기원보	5	강서수도사업소
10	손성기	지방수도토목기원보시보	1	영등포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